

# 건축사법 개정법률에 대한 양케트

## (2)

1977년 말에 공포된 건축사법 개정 법률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법률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건축사계의 발전을 모색하여야 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주요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귀하의 고견을 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축사법 제22조의 도서 등록 의무는 도서 신고 의무로 개정되었습니다. 건축사 협회의 운영 및 건축계의 발전과 결부하여 사전 신고 또는 사후 신고가 좋을지 그 이유에 대하여
2. 건축가의 등급을 폐지하여 1급 건축사는 개정법의 건축사로 하고 2급 건축사는 개정법의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때까지 계속 존속하되 그 업무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2급 건축사가 개정법의 건축사 자격을 취득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명실상부한 대책에 대하여
3. 건축 보조사 제도가 신설되고 건축사 사무소에 건축 보조사를 확보하여야 하는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인력난이 그 어느때 보다도 심각한 현재 건축 보조사의 확보 및 관리는 건축사 사무소의 난재라고 보는데 귀 견과 그 대책에 대하여
4. 합동 사무소 제도가 신설되고 합동 사무소 등록자만이 일정 규모의 건축사 업무를 하게 되며 또 업무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지도록 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은 건축사 사무소의 대형화를 향한 개편, 빈번한 이합 현상과 분쟁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이를 극복하고 건전한 발전을 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5. 기타 개정 건축사법중의 문제점이나 건축사 협회 발전을 위한 정관 개정 등에 대한 고견.

### 서울지부 김형배

답 1. 건축사법 제22조의 도서등록 의무는 당연히 사전신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일 사후신고가 된다면 우리 협회의 질서가 엉망이 될 것은 물론 정부입장에서도 건축업무가 무질서하게 되기 때문에 이는 현행과 같이 사전신고가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됨.

답 2. 종전 2급 건축사는 되도록 빠른 시일안에 개정법의 건축사로 구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다음의 몇가지 열거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① 우선 금번 건축사법의 개정에서 종전 1, 2급을 통합하는것은 앞으로 종전 2급을 조속히 구제되지 않는 한 영구히 업무적인 급별이 계속 존속되는 것으로 건축사법 개정의 의의가 없다고 생각 됩니다.
- ② 개정된 건축사법에 명시된 사항이 부록 4호에 명시된바와 같이 건축사의 적용을 받을 뿐아니라 부록 5호에 명시는 건축사 면허수첩을 교부운운한 것은 건축사로 인정하고 부록 2, 3호는 건축사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으니 이런 사항을 합리화 하기위해서라도 종전 2급은 조속히 구제 되여야 합니다.
- ③ 우리나라는 현재 기술적 인재가 고갈상태에 있을뿐 아니라 외국(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건축사의 부족을 말할 필요 조차 없는 실정에서 종전 2급 건축사는 조속 구제되어야 하며 만일 이제 전파목 또는 일부파목을 시험을 치뤄 실력에 의한다는 이론이라면 종전 1급 건축사도 현재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거쳐야 확고한 실력위주의 건축사가 배출되는 이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답 3. 보조사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실정으로는 당분간 강제규정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까지 보조사에 대한 정책이 없었으며 또한 현재 기능직의 인력난이 심각한 때에 강제규정은 보류함이 가하다고 생각됩니다.

답 4. 합동사무소 권장제도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단, 사무소의 질적향상을 위한 합동 또는 기술의 합리적인 합동사무소이어야 하며 지금 시행되고 있는 행정만을 위주로한 합동 즉, 연대책임만을 위한 합동사무소 권장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 됩니다.

### 충남지부 대의원 柳 聖熙

- 답 1. 사전신고가 좋다고 生覺합니다.
- 답 2. ① 2급건축사 자격 취득후 一定期間의 경력을 참고하여 자격 취득케 하는것과,  
② 期間内에 연수교육 또는 저명인사 초청하여 교육후 시험 또는 절차를 밟어서 자격 취득케 해주었으면 함.
- 답 3. 인력난이 심각한 현시점에 건축사 사무소에 꼭 보조사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지 않음.
- 답 4. 꼭 합동사무소가 필요하다고는 生覺지 않습니다.  
종전대로 個個人의 事務室을 運營하는 方向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함.
- 답 5. 건축사의 수가 증대함에 따라, 건축사 복지 생활을 염려한 나머지, 건축사의 의료 보험제도를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 부산지부 대의원 유광택

- 답 1. 사전신고로 하되 도서심사 제도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 이유: 도서작성의 질을 향상시키고 법의 질서를 유지키 위함.
- 답 2. 경력에 따라 응분의 전형을 거쳐 자격이 있는자는 건축사로서 구제함이 가함.  
이유: 현재 2급 건축사도 사무소 개설자로서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자는 구제해야 될것임.
- 답 3. 장차 건축사가 되려면 건축사 사무소에 근무함이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조사학보를 개설사무소에 의무화 하지 않는것이 좋다. 이유: 현재 절대 인원수가 부족한 시기이므로 만일 보조사 고용을 의무화 한다면 인건비 팽창의 요인이 되고, 따라서 설계비 코스트업 현상이 일어날 것임.
- 답 4. 건축사 자격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이지 결코 어떤 조직에 의한 면허가 아니므로 조직이 광범하다 하여 창작이나 예술적인 면이 우위에 있다고 할수 없으며, 양적으로 많은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건축사 자신이 판단할 것이지 결코 조직을 선행 시키는 일은 부당하다고 됨.
- 답 5. A) 현재 팽창 일로에 있는 협회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은 전국통합예산 제도를 중지하고 각 지부단위로 한 독립예산으로 환원하여 현 협회 본부를 전국 건축사 연합회 형식으로 하면 현행 예산의 절반 이상이 절감될 것임.  
B) 현행 실적 회비 산출기준표의 종별 및 구조별 공사비를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이유, 건축사 업무 보수기준은 종별 공사비에 따라 결정될 것인바 현행 실적 회비 징수기준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대다수 건축주는 실적회비 산출기준이 바로 설계비인양 오해하여 왕왕 시비의 원인이 된다.  
C) 각지부 운영상 종전과 같이 간사회 지도회 윤리위원회 등 임원회가 존속되어야 함.

### 경북지부 대의원 고만권

- 답 1. 사후 신고가 좋읍니다.
- 답 2. 1급 건축사는 건축사로 되었음으로 2급 건축사는 구법에 의한 2급 건축사로 존속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정의 전형에 의하여 앞으로 건축사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고 사료 됩니다.
- 답 3. 건축사 1명에 대하여 보조사 2명을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답 4. 합동사무소는 건축사의 자율적으로 하도록 권장할 것이지 법령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앞으로 약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서서히 합동이 되도록 우선 동일 구청 관할 내의 위치한 건축사와 건축사는 공동사무소가 아니라도 합동 할수 있는 길을 터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 답 5. 합동사무소에 대하여 반드시 2인 혹은 3인이 동일 사무소에 모여서 한다는 것은 서울, 부산, 대구의 경우 그 사무소의 면적이 최저 100m<sup>2</sup>~150m<sup>2</sup>을 구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일 구청내의 경우 사무소의 위치를 달리하여도 그 거리가 300m이내일 때는 합동 할수 있도록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회 발전을 위하여는 통합예산을 지향하고 각 지부의 독자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종전과 같이 환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북지부 포항분소장 양 임 수

### 1. 사전 신고가 좋다.

이유 : 무등록 건축사 무자격 건축사 소위 3급 건축사의 활동으로 또한 일부회원의 명의 대여 등조로 설계비 덤핑에 의한 권익을 손상할 우려가 있다. 또한 건축사의 복지 및 건축사협회의 발전을 위해 사전신고가 좋을 것 같다.

### 2. 2급 건축사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때까지 계속 존속보다는 일정기간에 위하여 전형 또는 시험을 쳐서 건축사 면허 취득토록하는 것이 좋겠다.

### 3. 보조사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좋으나 반드시 건축사에게 숫자를 확보케 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건축사는 조형창조 예술가인데 보조사를 강제 제정으로 확보케하는 것은 모순이다.

### 4. 합동사무소의 운영은 좋으나 보다 대형화하고 보다 건축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규정과 판정에서 위임 받은 연대 감리제도에 대한 업적 권한을 위임 받았으면 한다.

### 5. 공사감리상 행정력을 동원해도 시정되지 않은 위반사항을 건축사의 연대 감리로 위반사항을 시정 권유로 지도 켜되어 있는 현 시점으로는 연대감리 애로 사항중의 하나이다.

## 서울지부 서울지부간사 심기섭

### 답 1. 사전신고 또는 사후신고에 대하여,

사전신고가 합당함. 사후신고를 하면 신고의 불성실 및 누락이 많아 통계상의 과악곤란, 저작권침해, 회원 간의 불화조성, 회원명의 도용 가능성이 있음.

### 답 2. 2급 건축사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함에 있어 도움대책.

① 유능한 교수를 초빙하여 소정의 학과 교육 실시.

② 경력평가

### 답 3. 건축보조사 제도에 대하여,

건축사 1인에 자격 구비한 보조사 1인이 합당함.

① 보조사의 처우개선

② 대한건축사 협회와 학교와 자매결연 실시.

### 답 4. 합동사무소에 대하여,

① 합동사무소는 건축사 7인 이상의 주식회사로 구성하여야만 이합현상과 분쟁을 해소 할 수 있음.

### 답 5. 개정건축사법 중의 문제점이나 협회 발전에 대하여,

① 2급건축사는 경력평가 및 소정의 학과 교육 실시 후 건축사로 통합함이 가함.

② 건축사 응시자격은 대학교 졸업후 부여하고 소정의 실무 경력 7년이상이 경과된 후 등록을 할 수 있게 함이 가함.

③ 대의원수는 회원 10인당 1인씩 구성하여 다수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음.

④ 협회예상을 각 지부 차립 절약정신에 입각하여 통합예산을 지양하여야만 예산절감을 가할수 있음.

## 서울지부 간사 송인창

### 답 1. 사후신고로 하여야 함.

협회의 존재 가치가 없다.

### 답 2. 2급 건축사 득한후 7년된자는 자동 건축사로 인정되게 하였으면 합니다.

### 답 3. 합동사무소를 법적 뒷받침에 의해 이루어지면 자연 해결되리라 봅니다.

### 답 4. 강경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 답 5. 통합예산 폐쇄. 분소 존속.

## 경북지부 대의원 朴 海龍

### 답 1. 도서신고에 대하여

현행과 같은 운영하의 도서등록은 일정률의 실적회비를 증수하는 방법의 제도에 지나치지 않음으로 “사후신고”로 함이 당연하다고 사료 되오나 허가 판서의 실무적인 부족과 도서검토의 시간적 절감에 기여하며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감안할때 도서의 하자가 없다고 단정하기 곤란함에 제도적 개선으로 도서의 심의를 강화 시행한다면 “사전신고”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답 2. 건축사의 등급폐지에 대하여

개정된 건축사법은 표면상(법 3조, 법 4조, 법 12조, 법 15조)으로는 일원화를 기한듯하오나 내용면의 (동법 부칙 2항의 경과 조치)업무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봐서는 이원화로 되여 있으며 2급 건축사의 자격의 위치가 애매하다고 사료됨. 개정법의 취지로 봐서 자격의 일원화가 목적인바 기득한 2급 건축사에 대하여는 업무실적의 기준 년한을 채택하여 동 건축사자격이 취득되도록 하는 방안이 요망됨.

### 답 3. 보조기사에 대하여

자격기준의 인적상황 및 자격자의 동태를 살펴 볼 때 보수가 월등한 국내외의 건설업체로 진출지망이 절대수로 인하여 보조사의 확보가 극히 난점으로 예상되오니 현시점에 있어서는 1개 사무소당 1명 기준의 방안이 요망됨.

### 답 4. 합동사무소에 대하여

(1) 본전에 대하여 현재 상당수가 합동사무소로서 운영하고 있으나 각자의 능력, 활동력, 개성, 지능, 이해 관계등의 차의로 애로사항이 허다하여 연대 책임 또한 타의에 의한 행정처분도 적지 않았읍니다.

고로 운영의 자유화가 보장되고 연대책임의 면책내지, 설계책임자와의 차등이 있었으면 사료함.

(2) 법 제23조 2항의 일정사항은 합동건축사무소 개설자만이 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합동을 하지 않는 건축사에게 업무수탁피해가 가능한 적도록 회방함.

### 답 5. 건축사법중의 문제점 및 건축사협회의 발전의 건

#### (1) 건축사법에 대하여

(가) 법 제3조의 등급삭제. 제4조의 1급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의 삭제. 제12조의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5조의 2급 건축사 자격시험 삭제등 개정의 내용과 취지를 볼때는 1급 및 2급 건축사를 건축사로 일원화 하였다고 간주되오나, 동법 부칙 2항을 봐서는 경과조치로 조건부의 2급을 규정하고 있음으로 대단히 애매한 해석이 되오며 업무집행에 있어서 자격의 표기, 건축사의 용어에 난점이 있지않나 사료 됩니다.

(나) 앞으로 건축사가 없는 시·군에도 1명이상의 건축사가 배치되도록 하는 시정이 예상되는데 이를 위하여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업무의 취급한계(구조별, 용도별, 면적별)을 정하여 당해 시·군 행정구역을 이탈할수 없도록 하고 사무소 신기등록은 건축사가 없는 시·군에 일정원수가 달할때까지 잠정적으로 규정하는 제도가 요망됨.

(2) 건축사 협회를 건축사 연합회로 개편을 요망하고 불연이면 현정관을 대폭 발전적인 개정을 하되 지부 독회제로 하는 제도가 요망됨.

## 경북지부

답 1. 13년간의 육성한 건축사 협회가 실적회비 증수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인데 사후신고한다면 재정연출에 타격이 크고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과 도서작성에 완벽을 기할수 없음.

답 2. 건축사의 자격을 一元化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면 2급 건축사는 기덕권이 있어 연한을 정하고 몇년 이상 개설한 2급 건축사는 서류전형으로 자격을 부여함이 타당함.

답 3. 건축사 보조원에 대하여 보조원이 많이 부족한 현실이므로 건축사 1人에 보조사 1人 이상으로 하고 공과대학을 졸업하면 학과시험을 응시하도록하고 전문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자는 실무경력의 적당한 年限을 정하여 건축사 자격응시 시험에 응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답 4. 합동사무소는 10人以上으로 제정함이 可하다고 생각함으로 대단위로 합동하면 경쟁율이 적을것임.

답 5. 우리사회는 너무나 모든면이 충실히 못함을 자인할뿐 건설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하더라도 맹종할것은 없으며 좀더 강력한 체재가 되어 회원의 복리 증진이 되게 힘이 可함.

### 강명구 전임회장(본협)

- 답 1. 第22条의 도서등록이 도서신고 의무를 개정된때에는 그나름대로의 큰理由가 있었음을 전설부에서 시정한 것이기에 모든 그동안의不合理를 시정하고 도서 등록時와 같이 事前에施行되는 것이 도서등록에서 신고로 개정된 中間의 마찰을 減小시킬수 있다고 봅니다.
- 답 2. 医科大学 졸업생이 医師試験을 곤 치를수있는 制度가 建築士만이 卒業后 수년 실무에만 시달리다 合格率이 저하되게 하는 理由를 먼저 建設部에 물고 싶습니다. 또한 2급 건축사라 할지라도 1급以上 実務成績이 우수한 건축사가 만이 있음으로 건축사 人力需給의in 面으로도 簡單한 実務講習을 年 1回式 4月卒業으로 1級으로 認定해 주도록 하는 制度를 強力히 勸합니다.
- 답 3. 干先 大学, 專門校의 教育方針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現下의 工大 建築科는 많이 建設技術者 養成所로 格下된 点입니다. 미국의 大学에서는 週當 設計時間이 最小 16시간 내지 24시간에 比해 우리나라에서의 設計時間은 不過 4~6시간인 대에도 그時間을 技術者 応試에 對備하는 特講으로 代替되는수가 많음으로 이러한 추세로는 앞으로 우리나라 工大 建築科 卒業生은 技術者 教育만으로 設計를 하는 건축사 製出은 中斷될 形便임으로 人力需給上은 勿論 建築向上의 절름발이 教育이 우려되며 건축사의 数的不足은 勿論 보조사도 점점 求하기 힘들게 될것입니다.  
그럼으로 보조사가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資格을 보조사 아닌 技術者免許 所持者보다 優待하는 制度가 꼭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 답 4. 現在 狀態로는 合同사무소 制度가 必要하다고 보나 2人운영 사무소라 할지라도 設計의 質과 責任이 完全한 것이 認定되는 制度가 있다면 이는 合同의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結局 一般市民들이 願하는 設計의 質과 그 責任이 一般에게 普遍적으로 認定될 때 까지는 잠정적으로 必要한 制度로 생각합니다.
- 답 5. ① 改定건축사법은 그동안에 法運用上만은 缺点을 発見하고 그示正을 위한 改定임으로 그 改定건축사 법의 成法취지를 充분히 理解하고 運用의 妥를 기해야 하며 改定건축법에 문제점이 運用途中 発見되면 점진적으로 改善할수 있는 길은 터 있을 것으로 압니다.  
② 協会발전을 위한 정관改正은 協会를 위한 정관 개정이 아니라 建築士를 위한 정관개정이라는 觀點으로 根本의in 精神이 개정에 反映되어야 합니다.  
任員을 위한 協会運營의 内実은 協会無用論으로 까지 成長되기 쉬움으로 會員을 위한 奉仕精神은 會員에게 直接적인 福祉와 나아가 協会發展의 밑바침이 된다는 일을 알아야 하며 이러한 精神이 實地의으로 反映될 수 있는 정관 개정은 꼭 必要합니다.

### 경북지부 대의원 임두현

- 답 1. 등록의무는 도서신고의무로 法改正이 되었기에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일이 아닐수 없읍니다만 도서의 신고 의무는 사전신고 나마 꼭 할수 있도록 努力하여 주길 바라겠습니다.
- 답 2. 今委政府가 提案한 建築士法 改正法律의 根本提案 目的是 建築士의 資質向上과 現行 1級 및 2級으로 区分되어 있는 建築士의 等級을 一元化하는데 目的은 두고 있는 것은 事實입니다.  
過去 国家技術資格法 制定當時 過程에서 둘이켜 본다면 建築設計分野를 이 法에 둑으려고 했을때 文公部 建設部, 建築士協会, 建築学会, 建築家協會 및 建築關係 여러 団體에서는 一致하여 建築設計分野는 어디까지나 造形創作藝術 임으로 둑을수 없다고 극력 反對하여 除外 시킨 事実을 상기하여 볼때 建築士의 資格一元化는 너무나도 当然한 事実이며 타당성이 認定된다고 生覺됩니다. 하지만 同法 附則 2項에서 明文化하고 있는 現行 2級 建築士에 對하여 資格을 取得 할때까지 3층 以下 廷屬積 1,500m<sup>2</sup> 以下の 業務量을 区分 規定하고 있는 것은 母法改正過程에서 본다면 너무나도 相反된 措置가 아닌가 生覺되고 만일 造形創作分野에서 例전에 画家들의 業務限界 過程에서 1級·2級의 画家가 法上 있다하여는 過然 어떻게 될것인가 심히 生覺해 보지 않을수가 없는 重大事입니다. 하오니 建築士法 역시 業務限界를 存續시키는 것보다는 国家技術 資格法의 規準에 의거 經過年限이 된 過去 2級建築士에 限해서는 書類銓衡만으로 建築士의 資格一元化의 大課題 解消를 為하여서는 많은 難題를 두고 있는 施行令改正過程에 있어서 加一戶 建築士의 資格向上을 기여할 수 있는 妙案을 모색하여 多數人이 칭망하는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답 3. 改正法에서 補助士의 資格規準은 相當히 高은 年限線으로 規定하고 있다고 生覺되나 이는 建築士 資格試驗에 応試하는 實務經歷 年限規準에 特惠措置 있는 만큼 現行은 많은 難題가 있겠지만 자라나는 後輩들의 社會進出이 2年間이나 단축되는 만큼 現下人力不足이 일어나고 있는 實情에서 감안하여 볼때 建築士 免許取得의 試驗 限定年限의 特惠를 주도록 되여 있는 過程에서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生覺됩니다 마는 郡小都市의 크나큰 難題가 초래될것이 重大視되오니 이 点 널리 參酌하시여 個人이 運營하는 事務所 및 合同事務所의 채용 人員規定을 깊이 研究하여 全國的인 難題가 초래되지 않도록 바랍니다.

#### 답 4.

建築設計分野가 그야말로 造形創作藝術이라면 建築士의 連帶責住制란 있을수 없는 用語上으로나 制度가 마땅히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生覺합니다.

建築規模가 大型化해 가고 建築技術이 高度로 必要하는 批時 建築士 相互間의 技術을 交換할 수 있고 事務所 運營費의 節減과 過多한 競爭難을 考慮해 볼때 合同事務所의 開說을 勸裝할 必要性은 至大히 認定하는 事實이나마 現下 小都市와 大都市와 大都市와의 見解가 너무나도 많을줄 믿읍니다. 왜냐하면 其理由로서는

國務總理指示 事項인 住宅行政簡消化 方案策으로 地方郡小 都市에서는 現在 3人組 以上의 組編成이 이 루어져

多小나마 過多 dumping 防止의 一益을 차지하고 있는 事實과 더불어 建築交換의 技術交換과 運營費의 節減等의 기여하고 있는 實情이나마, 이번에 施行令 改正案에 살펴본다면 合同事務의 構成人員 및 一定 規模以上의 設計可能範囲 等을 읽어보았지만单一建築物로서  $33.000m^2$  以上 또는 3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65.000m^2$  이상의 대상 建築物은 合同事務所의 開說者만이 할수 있다고 案이 作成되어 있으나 地方에서는 그야말로 그림에 띡인줄 認識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꼭히 이法을 施行令에 改正한다면,

A. 合同事務所의 構成人員은 3人 以上으로 하고

B. 事務對象面積은 地方으로서는 現在대로하고单一建築物로서는 改正案의 面積보다 半으로 줄여줄것을 願하는 바입니다.

C. 補助士 채용범위는

個人事務所는 1人 以上

3人以上 合同事務所는 2人以上.

6人以上 合同事務所는 4人 以上으로하되 2人 초과할때 마다 補助 1人 追加채용.

D. 株式運營體이든 個人이 3人 以上構成되어 運營하든 合同事務所로 認定하여 줄것을 견의 합니다.

만일 現在案대로 2人 以上으로 改正될 경우 地方에서는 또한번 크나큰 혼란과 물의를 야기시키게 됨을 深히 우려되는바 全國的인 基礎調查와 至大한 研究 檢討가 必要할줄 믿읍니다.

※ 본 앙케이트 대상은 본협 전국대의원 및 전임회장, 임원 각대학(본협 유관 교수)을 중심으로 약 200명을 선정  
발송 하였음을 밝힙니다.

본고는 이상과 같은 경유로 그설문에 응답하신 분들의 회신 내용을 접수순대로 실린다.